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The Comprehensive Policy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gress and Challenges

김성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영역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으로, 1998년 제1차 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2018~2022)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에 걸쳐 계획을 추진한 결과, 정책 분야별로 체계적인 틀이 갖춰지고, 정책 대상자와 수급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화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개별적 욕구 맞춤형 사례관리체계의 필요성, 국제 조류를 반영한 추진 전략 및 장애인정책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부처별 유기적 연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장애 현장과의 소통, 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합리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분리통계의 강화와 정신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12월 국무총

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결정하고, 총리 훈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sup>1)</sup> 수립을 의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제1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제3차 계획까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으로 시행되어 오다 2013년 제4차 계획부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장애인 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이 수립·시행된 이후 2003년 제2차 계획(2003~2007), 2008년 제3차 계획(2008~2012), 2013년 제4차 계획(2013~2017)이 수립·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제5차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의 전방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계획이다. 제4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장애인정책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정책 대상자 및 수급 범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 방안, 장애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준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개별적 욕구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 조류를 반영한 추진 전략과 자립 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장애인정책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4차에 걸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등을 통해 추진 경과를 제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계획의 주요 내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 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3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을 비전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복지, 교육, 고용 3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 7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제1차 계획의 시행을 통해 1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sup>2)</sup>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의무고

2) 제1차 계획에 의해 이전의 법정 장애 범주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이외에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5가지 장애 유형이 포함되어 10개 유형으로 확대됨.

용제 강화, 특수학교 확대, 편의시설 확충, 국가 종합5개년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대책,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의 부족, 장애인단체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2003~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정부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소요액 추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제도 개선 계획, 생애 단계별 계획 마련 등으로 구체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②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 장애인 고용 실현 ④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5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체계 등의 7대 분야에서 43개 영역, 10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 계획의 시행 결과, 2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sup>3)</sup>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범위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문화바우처 도입, 유엔장

애인권리협약 서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가 시혜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보였다. 즉,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의 미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 장애인 권리 기반 정책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과 계획의 각 과제 간 우선순위가 미설정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 다.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2008~2012)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이전 계획에 비해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과제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②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3) 제1차 계획에 의한 1단계 장애 범주 확대 이후 제2차 계획에서는 기존 10개 장애 유형 이외에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어 현재의 15개 장애 범주로 유지됨.

사회참여의 4대 분야에서 5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제3차 계획의 시행으로 장애인연금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 아동 의무교육 확대,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 분야별 법·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나 부처간 유기적 연계 부족,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에 따른 생활 안정 지원 이외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충족도 미흡, 성과 지표의 미개량화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 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과제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 목표에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①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

였다. 제4차 계획은 장애인에 한정된 기존의 정책적 관점을 비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 증진의 4대 분야에서 19대 중점 과제, 7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제4차 계획의 시행으로 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사업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확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및 인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와 함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특수학교(급) 확대 및 고등교육 지원 확충,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복지일자리 확대, 진솔조력인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처별 추진 정책의 유기적 연계, 초기 단계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및 부처간 협력과 고용 유지, 재난 대비 안전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개요(1998~2017년)

구분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제4차(2013~2017)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 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 서비스 개발·제공 ②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 장애인 고용 실현 ④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	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②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①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주요 정책	장애 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 사업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참고 자료 재구성.

###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sup>4)</sup>

#### 가. 추진 방향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 없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sup>5)</sup>”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활동, 권익 및 안전, 사회참여 등 5대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5년간 장애인의 자립 생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해 크게 종합 정책 목표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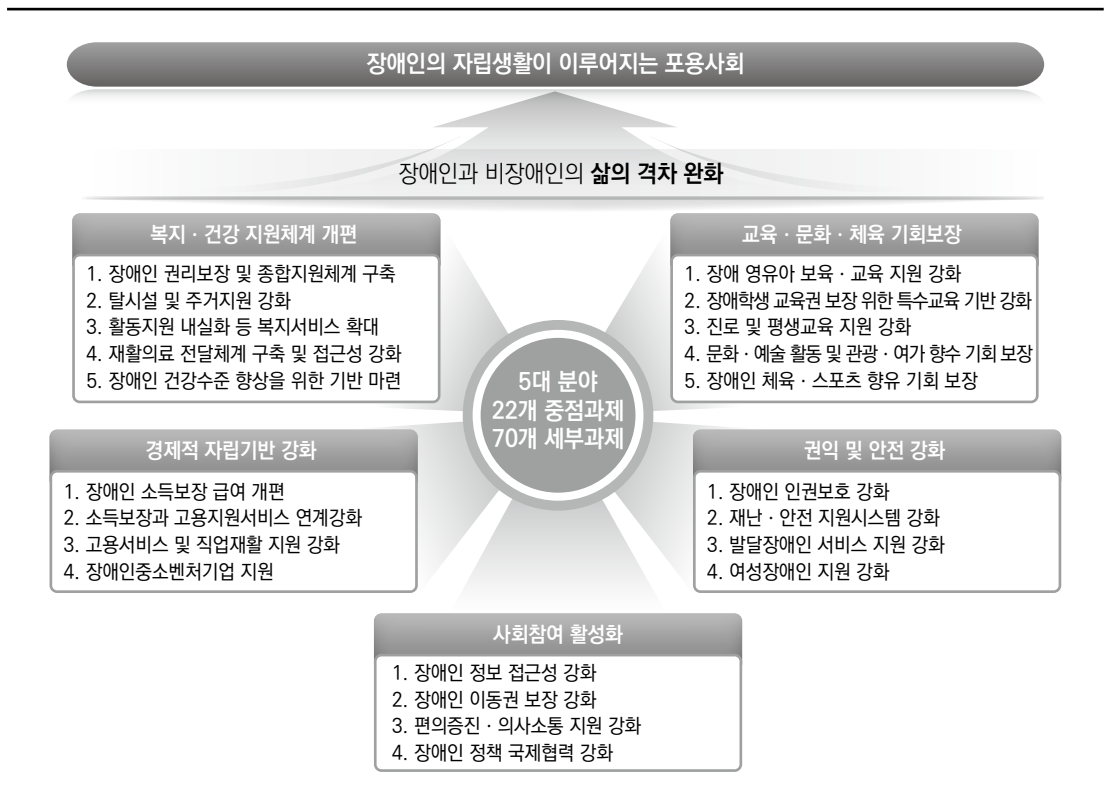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8)의 보도자료와 관계부처 합동(2018) 참고자료의 내용을 이 글의 문맥에 맞게 정리, 요약함.

5) 정해식(2013)에 따르면,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사람들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포용은 이러한 시민권이 현실화되는 정도를 의미함. 이런 측면에서 본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이 개인 차원이 아닌 포용적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김성희 등, 2017에서 재인용).

별 세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종합 정책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이고, 5대 영역별 세부 정책 목표는 ①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②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③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이다. 제5차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였고, 특히 주요 장애인정책 분야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등 장애계의 제안 과제도 추진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림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정책 비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참고자료.

나.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1) 복지·건강 분야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전략 하에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 활동 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단계로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우선 도입(2019년 7월)하고 2단계 이동 지원(2020년), 3단계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2022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 종합판정도구의 단계적 도입 방안

시기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2019년 7월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2020년	이동 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소득·고용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8. 3. 5.).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보도자료.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강화, 전문적 사례관리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 아동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2018년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 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확대 및 내실화,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 보조기기 확대 등이 있다.

## 2) 교육·문화·체육 분야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라는 전략하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이라는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2017년 450명 → 2018년 577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재활·복지·교육 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 3) 경제활동(소득·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소득·경제활동 기반) 분야는 ‘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 자립 기반 강화’라는 전략하에 장애인 소득보장급여 개편, 소득보

장과 고용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 원, 2021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증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수급 기준 마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장애인 창업 지원 등이 있다.

## 4) 권익 및 안전 강화 분야

권익 및 안전 강화 분야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전략하에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 장애인 지원 강화라는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며, 사회 전반에 장애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확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와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욕구 기반 보호·돌봄체계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의료적 지원 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이 있다.

#### 5) 사회참여 분야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하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 편의 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장애인정책 국제 협력 강화라는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이외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 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Barrier Free, 장애

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철도·공항·버스 등의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인천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5대 분야별 추진 과제들은 정책 성과 평가를 통해 추진 과제별 성과 목표의 달성도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결과 측면에서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5대 정책 분야별로 장애인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근거해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주기적으로 환류하는 방식으로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4. 나가며

제4차까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마무리되고 2018년 제5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정책 분야별로 기본 틀이 완비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유기적 연계 미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체계 및 장애 현장과의 소통 부족, 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부족, 계획 추진 시의 성과 목표 및 지표 변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정책의 핵심 쟁점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강화 등이며 이는 현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향후 설정되는 핵심 쟁점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은 계획 집행 과정에 서라도 유연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은 물론 과학적인 정책 평가를 위해 장애분리통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타 영역에 비해 관련 예산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간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8. 3. 5.).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2018~2022). 참고자료.

정해식. (2013).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40(3), 233-268.

## 참고문헌

김성희, 오욱찬, 황주희, 박경수, 김용득, 이선우 등. (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예정).

김성희, 이송희, 김완호, 민홍기, 박경수, 박은혜 등. (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희, 이호선, 강정배, 이해경, 서해정, 김승완 등. (2016).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